

의안번호	2208294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3. 31.
추 계 번호	25B09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u>가공·저장·유통·판매업</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현행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u>산</u>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으로 개정	의무규정
2	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항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함	의무규정
3	안 제32조(농지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 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u>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u>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 현행 “적절한 규모”에서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항 신설	
3	안 제32조(농지의 보전)	

2. 상세 사유

□ 농업의 정의 변경(안 제3조)

- 현행법은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현행법 상 농업의 범위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자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가공·저장·유통·판매하는 업종의 종사자가 추가로 농업인에 포함되어 농업인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법 제3조제2호)
- 농업인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 농업인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또는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표 2]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대장 발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가입	대학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용 전기 사용	지자체 사업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자료: 농촌진흥청, 「똑똑! 청년농부」, 귀농귀촌팀. 검색일: 2025.3.31.
<https://www.rda.go.kr/young/board/board04.do>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또는 수입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추가되는 농업인 수 및 농업인에 대한 혜택(예산지원 및 세제지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 종사자로서, 추가되는 농업인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안 제7조 및 제32조)

-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농지보전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